



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

-재판절차-

2024. 6.

사법정책자문위원회

I.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

1) 감정제도 개선

2)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

3) 판결서 적정화

4)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

- 이하의 주요 세부쟁점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증감·변경될 수 있음

II. 안건별 개요

1. 감정제도 개선

가. 논의의 필요성

■ 감정절차의 지연 심각

- 민사사건 장기미제사유의 30.8%(4,988건/16,215건)가 증거조사 지연임
- 대부분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의료, 건설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에 비하여 처리기간이 현저히 길어 지연이 심각함

■ 감정내용의 부실

- 건설감정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(만족 10% vs 불만족



41%)

- 불만족의 주 원인은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 부족(42.3%), 감정인의 업무 소홀(39.2%), 감정인의 전문분야 불일치(35.1%), 감정인의 공정성 의심(32%) 등

▣ 감정절차 지연 및 부실의 원인

- 감정인의 감정 희망여부, 자질, 세부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는 선정 방식
- 감정인 교육 및 평가 시스템 미흡
- 당사자와 법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감정 준비 절차의 부실
- 감정 진행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한 사건 관리가 부실함
- 보충감정, 재감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

▣ 의료감정 절차 지연의 특유 원인

- 감정은 의사의 부수적 업무에 불과
- 감정을 진행할 경제적·비경제적 유인 부재

나. 주요 쟁점

1) 감정절차를 관리할 기구 설치

- ▣ 의료,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절차 관리를 위한 기구 신설
- ▣ 감정절차에서 전문가의 참여로 감정 지연 방지 및 충실한 감정 도모
- ▣ 감정절차의 통합관리로 절차 효율성 제고, 감정인과의 소통창구 역할 기대

2) 의료감정 제도 개선

- ▣ 감정의의 경제적 유인 증진을 위하여 감정료 증액 필요



▣ 감정의 수 확대를 통하여 신속한 의료감정 도모

- 감정촉탁기관 확대 정책 추진, 진료기록감정에서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 등

▣ 의료감정인과의 소통 촉진 및 우수 감정의 선정 등 비경제적 유인 활성화

3) 감정인 평정 개선

▣ 감정인 평정을 활성화하여 부실하고 지연되는 감정인을 명단에서 적극 배제 추진

- 감정인 평가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평정하도록 평정 시스템 개선
- 감정인 평정방법을 직관적이고 간이하게 변경

▣ 감정보상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감정인 평정에 반영

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- ▣ 감정관리기구의 구성 및 역할
- ▣ 의료감정료 적정화의 방법 및 규모
- ▣ 감정인 평정 개선 방안

2.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

가. 논의의 필요성

▣ 공판중심주의의 의의

-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·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



▣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필요성

- 현재 ①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, ② 증거분리제출의 실무상 어려움으로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 진행
-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,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파악 및 심증형성의 어려움, 법관의 심리 주도권 약화 → 재판의 비효율 및 지연 발생
 - 예컨대 서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필요한 증인과 불필요한 증인을 구별하기 어렵고, 수십, 수백 명의 증인을 분류 없이 소환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과 절차 지연이 발생함
-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양측의 무분별한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가 지연되어 외부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

▣ 개선 방안 모색

- 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재판 효율화 및 지연 해소 도모

나. 주요 쟁점

▣ 복잡한 사건에서 표준화된 효율적 심리모델 발굴, 공유

- 법관, 검사, 변호사 등 절차참여자 인터뷰를 통하여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 방향 도출
-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리모델(예컨대 복잡한 사건 처리에 최적화된 표준화된 공판준비절차, 공판준비명령 등)을 수립·공유하여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도모

▣ 서증조사, 증인신문, 공판갱신 등 과정의 효율화 방안 모색

- 효율적인 서증조사, 증인신문, 공판갱신 방안 마련, 공유



- 형사소송법, 형사소송규칙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, 입법안 도출 포함
- 증거목록·증거의견 등 양식 및 기타 실무 개선 필요사항 발굴

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- ▣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들의 문제점 인식
- ▣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 심리모델
- ▣ 실무적 개선사항 및 입법안

3. 판결서 적정화

가. 논의의 필요성

- ▣ 법관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법관 증원이 되지 않고,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정착하는 상황 → 판결서 작성의 부담 완화 필요성 높음
- ▣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에 대한 요구 높아짐
- ▣ 법정 중심의 재판 운영 필요성

나. 주요 쟁점

- ▣ 판결서 적정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 등 분석
- ▣ 실시 재판부 운영과 관련된 분석 등
 - 판결서 적정화에 적합한 사건 분류
 - 적정화 판결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재판 진행방식 등 검토 및 공유
 - 특정 유형 사건에 맞는 기재례 발굴
- ▣ 판결서 적정화에 대한 의견 수렴
 - 향소심 재판부, 변호사 단체 등 대상 설문조사 내지 인터뷰



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- ▣ **판결서 적정화의 추진 방향 설정**
 - 확대 내지 전면적인 실시 여부
 - 대상 사건(소액/중액/고액/합의, 1심/2심 등)의 범위
- ▣ **구체적인 판결서 적정화 방식 검토**
- ▣ **판결서 적정화 정착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검토**

4.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

가. 논의의 필요성

- ▣ **민사 항소심 사건처리 지연 발생**
- ▣ **2024. 1. 16.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→ 위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현재 복심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항소심 심리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존재**

나. 주요 쟁점

- ▣ **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심리모델 검토**
 - **사건분류 및 쟁점(판단 대상)의 조기 정리**
 - 사건 분류에 따른 효율적 사건 관리
 - 심리방향의 조기 확정
 - **변론준비기일 운영 및 증거 채부**
 - 구체적인 절차진행 방안 - 실권효 제도 활용을 위한 전제
 -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채부의 기준 수립
 - **변론기일 운영**



-
- 심리의 방식 - 쟁점에 집중한 심리
 - 변론기일 횟수를 줄이되 해당 기일에서의 충분한 변론기회 부여

▣ 항소심 판결서 작성 방식

-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하는 판결서 작성

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- ▣ 민사 항소심 사건처리 지연 원인 분석
- ▣ '충실한 심리를 집중적으로 진행'할 수 있는 심리모델 검토
 - 심리모델 관련 민사소송규칙 개정사항 논의 포함
- ▣ 항소심 판결서 작성 방식에 대한 논의